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1. 11.

농림축산식품부
(농 촌 산 업 과)

1. 개정이유

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법령 정비에 따라 '20년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

2. 주요내용

- 농촌융복합 지원기관 지정기준 전문인력 요건에 농학, 농업경제학, 경영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석사학위 소지자이면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도 추가(안 12조제1항 별표1)
- 농촌융복합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 분야 경력을 추가하여 현장 경험 있는 인력확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별표1 중 “농학, 농업경제학, 경영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”를 “농학, 농업경제학, 경영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제12조(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)	제12조(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)																				
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<u>별표 1의 지정기준</u> 을 갖추어야 한다.	①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
② ~ ⑨ (생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
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지원기관의 지정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	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지원기관의 지정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 준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 직</td><td>법인 또는 단체일 것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 문 인 력</td><td>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 2. 농학, 농업경제학, 경영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업 무 시 설</td><td>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, 상담실 및 교육실을 갖출 것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업 무 실 적</td><td>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, 연구, 평가,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</td></tr> </table>	구 분	기 준	조 직	법인 또는 단체일 것	전 문 인 력	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 2. 농학, 농업경제학, 경영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업 무 시 설	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, 상담실 및 교육실을 갖출 것	업 무 실 적	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, 연구, 평가,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	<table border="1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 준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 직</td><td>법인 또는 단체일 것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 문 인 력</td><td>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 2. 농학, 농업경제학, 경영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업 무 시 설</td><td>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, 상담실 및 교육실을 갖출 것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업 무 실 적</td><td>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, 연구, 평가,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</td></tr> </table>	구 분	기 준	조 직	법인 또는 단체일 것	전 문 인 력	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 2. 농학, 농업경제학, 경영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업 무 시 설	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, 상담실 및 교육실을 갖출 것	업 무 실 적	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, 연구, 평가,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
구 분	기 준																				
조 직	법인 또는 단체일 것																				
전 문 인 력	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 2. 농학, 농업경제학, 경영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																			
업 무 시 설	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, 상담실 및 교육실을 갖출 것																				
업 무 실 적	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, 연구, 평가,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 준																				
조 직	법인 또는 단체일 것																				
전 문 인 력	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 2. 농학, 농업경제학, 경영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																			
업 무 시 설	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, 상담실 및 교육실을 갖출 것																				
업 무 실 적	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, 연구, 평가,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																				